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
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문화진흥과

(2016. 12. 6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김 은 모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23일(수)
- 제출자 : 유후렬 의원 외 9명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6년 11월 24일(목)

4. 관계법규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3조 (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)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< 제정이유 >

마포구 흥대 거리 주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리예술가들에게 실험적이고 다양한 문화장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·시행하여 마포구 지역문화를 발전시킴은 물론 마포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< 주요내용 >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(안 제5조)
- 라. 업무의 위탁 및 시행규칙 (안 제6조 ~ 제7조)
- 마.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바.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(안 제9조)

[검토의견]

- 본 조례안은 흥대주변 등 마포구 길거리에서 예술행위를 하고 있는 거리예술가들에게 직접 현장 무대인 객석의 주민들과 자유롭게 거리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
- 동(同)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9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
- 주요 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 ~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
 - 안 제3조에서는 거리예술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

를 규정함

안제4조에서는 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(3년 마다)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
안제5조에서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안제6조에서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 거리예술가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규정함

안제7조에서는 거리예술 사업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안제8조에서는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

안제9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

- 동(同) 조례안은 마포구 관광활성화를 위해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홍대를 왔다 가고 싶은 곳으로 유명한 관광명소인 홍대 문화거리 등 마포구 거리에서 거리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자유로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공연 장소 제공은 물론 공연 시 지원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·시행하여 마포구 지역문화 발전 및 마포구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
- 검토의견으로 동(同) 조례안은 2016.11.25.~11.30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거리예술의 지원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, 3년 마다 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해야 하며,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거리예술가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, 거리예술 사업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거리예술 활동에 공이 있는 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,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마포구 지역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향후 마포구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

- 우리 구는 지난 7월 1일 마포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진흥과와 관광과로 조직개편이 되어,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에 대한 업무가 이원화됨으로써 관광사업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될 수 있는 만큼 필요 시에는 부서별 구분없이 T/F팀을 구성하여 광흥당 전통 훈례식 및 공민왕 사당제 등 전통문화 행사와 마포나루 새우젓축제, 양화진 근대사 뱃길 탐방, 하늘공원 억새풀 축제 및 월드컵경기장 등 마포구에서 가지고 있는 유·무형 문화 자원과 한류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드라마세팅장이 있는 MBC방송국 등 상암 DMC, K-POP을 이끌고 있는 YG엔터테인먼트, 홍대 B-BOY 등 역사와 문화,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마포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 특히 조례 제정이후 문화관광 관련부서에서는 먼저 홍대주변, 상암 DMC거리 및 경의선 책거리 등 마포구 거리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거리예술인이 선호하는 공연장소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거리예술인이 선호하는 환경조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관광관련 당당부서에서는 마포구 거리예술인에게 공연할 수 있는 거리가 많고, 공연하기 쉽도록, 공연 시 재정 및 행정적인 지원 등 대책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규칙으로 정함은 물론 마포구 거리예술인이 마포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정착하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마포구 이외의 거리예술인들까지 마포구를 거리예술인들의 메카로 삼고 한번 마포구 거리에서 공연을 했던 거리예술인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마포구가 거리예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또한 마포구 거리 예술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예술 활동하기 좋고 재정적, 행정적 지원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로 알릴 수 있도록 마포IP TV, 전광판(공덕동, 합정동 로터리), 지역신문 및 내고장 마포 등에 적극 홍보 하여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관 계 법령

지역문화진흥법

(시행 2014.7.29.) (법률 제12354호, 2014.1.28., 제정)

제3조(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
2.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
3.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
4.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